

## 「公共圖書館의 司書職訓練問題」

發表者 成 宅 慶  
(韓國圖書館協會 總務部長)

## 一. 序 言

第三回 全國公共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 이렇게 全國의 公共圖書館人들을 한자리에 모신 앞에서 菲才 敎가 “公共圖書館의 司書職訓練問題” 라는 議題를 發表하게 되었음을 송구하게 느끼며 또 한편으로는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도리켜 보건데 第一回 및 第二回圖書館大會 까지는 主題가 主로 圖書館法 制定을 促求하는 內容이 었읍니다만 이번 第三回大會는 處地가 若干 달라졌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제 圖書館法施行令의 制定을 目前에 두고 同施行令과 相關될 여러가지 問題를 論議하게 되었습니다.

圖書館法制定을 促求할때에는 法안 制定되던 뒷일은 別로 問題될 것이 없을줄알았는데 法을 만들어 놓고 보니 그 뒤의일이 오히려 그야말로 “갈수록 泰山”이라 하겠읍니다.

저도 오늘 말은 議題를 圖書館法施行令과 相關하여 그間 몇가지點에 對해서 調査한바를 말씀드려서 이 議題에 對한 問題를 提起하는것으로 하고 여러분께서는 좋은 意見들을 많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二. 司書職의 定義 및 職務內容

이 議題를 다루려머는 于先 司書職이란 어떤것이며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即 司書職의 定義 및 그 職務內容을 檢討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司書職이란 圖書館의 專門인 業務를 遂行하는 사람을 司書라고 하는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을줄 믿읍니다.

그러나 圖書館의 專門인 業務가 무엇인가에 對해서 모르는 분도 많을줄 압니다. (勿論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면 다음에서 그 專門인 業務內容을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圖書館規模의 大小 또는 屬해있는 地域 社會의 性格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大體로 公共圖書館 司書의 職務는 다음과 같은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列舉하는것은 日本의 文社施 370號 文部省 事務次官 通牒 “司書及 司書補의 職務內容”입니다.

## 첫째 總務의 職務

- 1) 敎育委員會와의 連絡
- 2) 諸報告書類의 立案
- 3) 事務分掌의 立案
- 4) 諸規則의 立案
- 5) 全般的 諸統計의 立案實施와 檢討分折.
- 6) 館의 總合運營計劃의 立案
- 7) 資料總合運用計劃의 立案
- 8) 館外 奉仕計劃의 立案

- 9) 簡報 및 宣傳(機關誌 發行)
- 10) 圖書 및 圖書館利用法 及 圖書館技術의 指導와 普及을 위한 講習會의 開催
- 11) 綜合目錄의 立案과 作成(目錄係와 協助)
- 12) 印刷카드目錄의 轉旋 又は 作成
- 13) 豫算의 編成
- 14) 支出의 調整
- 15) 人事의 管理及 記錄의 處理
- 16) 新規採用者의 選考와 給與의 審査
- 17) 職員의 養成과 研修
- 18) 厚生, 娛樂
- 19) 圖書館協議會의 運營
- 20) 他館과의 連絡協力과 相互貸借
- 21) 學校, 博物館, 公報館, 研究所等과의 連絡協力
- 22) 圖書館關係團體及 友好團體와의 協助
- 23) 總合評價資料의 收集과 檢討  
**둘째, 整理的 職務**
- A. 圖書의 選擇
- 1) 藏書統計의 作成과 觀察
  - 2) 圖書購入 豫算資料의 作成
  - 3) 購入 又は 寄贈할 圖書의 選擇
  - 4) 公共團體 出版物의 選擇
  - 5) 複本 代用本의 決定
  - 6) 端本 缺本의 調査와 補充
  - 7) 見計本 賣入本의 取捨
  - 8) 寄贈本의 登錄 不登錄의 決定
  - 9) 廢棄圖書의 調査
  - 10) 視聽覺資料係와의 連絡
- B. 注文受入
- 1) 見積에 依한 注文先의 決定
  - 2) 注文카드의 整理
  - 3) 注文 list의 作成
  - 4) 交換寄贈의 申込
  - 5) 謝禮狀渡送과 記錄
  - 6) 圖書의 檢收(주문서 又は 기증의 례서와 對照)
  - 7) 續刊物의 受付와 記錄
  - 8) 寄贈本의 評價
  - 9) 圖書의 保護(正誤表의 處理, 事前製本의 決定等)
  - 10) 受入作業(登錄番號, 日付表, 藏書印, 배불부치기, 북포켓및카드부치기와 作成)
  - 11) 圖書原簿記入
- C. 分類와 目錄
- 1) 圖書의 分類
  - 2) 視聽覺資料의 分類
  - 3) 件名標目과 参照의 決定
  - 4) 圖書記號(著者記號)의 決定
  - 5) 書架簿의 記入
  - 6) 事務用(基本)카드의 作成
  - 7) 印刷카드의 注文
  - 8) 副出(分出을 包含) 参照카드의 作成
  - 9) 印刷카드의 加筆
  - 10) 前二項의 카드校閱
  - 11) 各種카드의 배열
  - 12) 排列카드의 檢閱
  - 13) 視聽覺資料目錄과의 總合調整
- D. 藏書保管
- 1) 排架(閱覽室, 書庫內共)
  - 2) 架上的 點檢과 整備
  - 3) 破損除籍圖書의 調査와 處理
  - 4) 製本種別의 材料指示及 納品의 檢査
  - 5) 製本圖書의 調査와 處理
  - 6) 簡易한 製本과 修理
  - 7) 法規의 加除

- 8) 貴重圖書의 保管
- E. 新聞雜誌
- 1) 選擇(등록 保관의 與否를 포함)
  - 2) 受付와 記錄
  - 3) 現品の 保護(綴, 假表紙)
  - 4) 既刊(未製本)分の 保管과 製本準備
  - 5) 缺號調査 및 補充
  - 6) 製本標題의 決定
  - 7) Clipping의 체크와 分類 又は 件名의 標題決定
  - 8) Clipping부치기
  - 9) 記事索引의 作成
- F. 特殊資料(範圍: 郷土資料, 小冊子, 一枚物, 마이크로 필름)
- 1) 收集方針의 立案
  - 2) 購入豫算資料의 作成
  - 3) 選擇과 注文
  - 4) 受入과 保管
  - 5) 分類와 目錄
  - 6) 圖書目錄과의 總合調整
  - 7) 主題目錄 又は list의 編纂
  - 8) 버어티칼 파일로 整理
  - 9) 인포메이션 파일의 준비
  - 10) 마이크로 필름의 管理(目錄과 一般圖書와 同)
- G. 視聽覺資料(範圍: 美術品, 模型, 展示物, 映畫 film, 그림연극, 幻灯스라이드, 사진, 掛圖, 포스타, 圖表, 地圖, 테코드 등 이와 同類의것)
- 1) 收集方針의 立案
  - 2) 購入豫算資料의 作成
  - 3) 選擇과 注文
  - 4) 分類와 保管
  - 5) 圖書目錄과 總合調整
  - 6) 修理
  - 7) 交換 又は 廢棄
  - 8) 映寫機及 附屬物의 操作과 管理
  - 9) 幻灯機의 操作과 管理
  - 10) 蓄音器의 操作과 管理
  - 11) 人形劇의 演技와 裝置의 管理
  - 12) 그림연극의 操作
- 셋째로 奉仕의 職務
- A. 館內奉仕
- 1) 資料의 出納
  - 2) 貸出者의 登錄
  - 3) 苦情과 要求의 處理
  - 4) 事故의 對策處理(汚破損, 紛失等)
  - 5) 延滯處理
  - 6) 郷土資料利用의 案內
  - 7) 地方行政資料 利用의 案內
  - 8) 時事에 關한 情報의 紹介
  - 9) 時事에 關한 資料의 提供
  - 10) 視聽覺資料利用의 案內
  - 11) 크리핑利用의 案內
  - 12) 目錄檢索의 案內
  - 13) 讀書相談
  - 14) 資料調製의 指導助言
  - 15) 各種索引及 書誌의 整備와 利用案內
  - 16) 雜誌索引의 整備와 利用案內
  - 17) 館內利用統計의 製作과 觀察
  - 18) 新利用者의 開拓
- B. 館外奉仕(集會, 展觀項參照)
- 1) 分館과의 連絡調整
  - 2) 出張所, 閱覽所, 配本所와의 連絡調整
  - 3) 貸出文庫(시청각 자료포함)의 編成과 巡回
  - 4) 自動車文庫(시청각 자료포함)의 編成과 巡回
- C. 集會, 展觀(館外奉仕의 경우를포함)
- 1) 讀書會(常置 又は 隨時)의 主催 又は 幹旋

- 2) 文學 其他 同好會의 主催 又は 幹旋
- 3) 各種 研究會의 主催 又は 幹旋
- 4) 美術品의 展觀레코드 及 映畫鑑賞會의 主催와 幹旋
- 5) 幻燈, 그림연극, 人形극, 及 展示物 등 利用의 集會의 主催 又は 幹旋
- 6) 新刊圖書 又は 主題別圖書의 展示會의 主催 又は 幹旋
- 7) 各種資料模型等의 展示會의 主催 又は 幹旋
- 8) 時事解説會 爲한 展示와 集會(常置 又は 隨時)

#### D. 兒童, 生徒

- 1) 이야기 時間의 指導
  - 2) 책 읽기의 指導
- 3) 圖書館利用法의 指導
- 4) 學校와의 連絡
  - 5) 어린이 모임의 거들기
  - 6) 兒童室의 經營管理
- (○表가 붙은것은 司書補가 自主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것임)
- 以上과 같은것이 專門職司書의 職務內容이라 하겠습니다.

### 三. 우리나라의 司書職

이와같이 專門的인 知識없이는 到底히 遂行할 수 없는 司書職에 對해서 現行 우리나라 法에서도 司書란 用語가 몇군데에서 불수가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圖書館業務에 從事하는 職員을 司書라고 하는것 밖에 그 資格 및 職務에 對해 言及된바가 없습니다.

그중 우리의 圖書館法 第六條 二項에서 “司書職員의 資格과 養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라고 하고 아직도 司書職의 資格 및 養成에 關해 規定해야 할 圖書館法 施行令이 未制定中 입니다.

故로 現行 法令에 나타난 司書職은 그 運用에 있어 專門的인 資格에 拘限되어있지 運用되는것은 當然한 歸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圖書館 施行令에서 司書의 資格을 어떻게 規定될지 現在로서는 알수없습니다만 從來의 圖書館職員이란 아무 하는 일 없이 도서관에 지키고 앉았다가 책을 찾는분에게 책을 내어 주지만 하면 된다는식의 消極的이고 受動的이며 斷面的인 奉仕 即 “書庫직이”라는 觀念에서 積極的이고 能動的이며 多角的인 奉仕를 遂行해야 할 現代의 概念의 圖書館機能을 認識하고 이러한 圖書館奉仕를 遂行하려면 有能한 사람이 그무엇보다도 先決條件임을 爲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알줄 믿습니다.

各階各層의 市民을 對相으로 奉仕해야 할 公共圖書館의 司書야 말로 더욱 學力面에서나 또 專門的인 實務面에서나 그 人格에서 他의 尊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一般的으로 圖書館職員이라 하면 一般職에서 밀려나서 流配되는것으로 認識하고 있는것이 現職에 계시는분이나 人事를 擔當한 분들의 思考方式입니다. 이 思考方式부터 우리는 고쳐야될 줄 압니다.

그러면 現下 우리나라 公共圖書館職員들의 學力 및 圖書館教育, 圖書館經歷과 年齡, 性別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現在 全國公共圖書館職員數가  
48個 圖書館에 341名 임(1964. 3. 31現)  
1963年度에 27個 圖書館에 237名 였음  
(1963, 3, 31. 現在)

一年 增加人員數 104名

48個 圖書館 341名中 調查質疑에 答辯  
한 38個圖書館의 199名에 對한 調查結果  
를 보면,

學力面

大學卒業한 者	59名 (29.6%)
高校卒業以上大學中退者	89名(44.7%)
中學卒業以上高校中退者	36名(18%)
其他	15名 (5.7%)

圖書館教育面

1年以上	8名 (약 4.2%)
100時間以上	14名 (약 7%)
50時間以上	26名 (약 13.5%)
無教育者	151名 (약 75.3%)

圖書館經歷面

10年以上	7名 (약 3.5%)
7年以上	3名 (약 1.5%)
4年以上	17名 (약 8.5%)
1年以上	112名 (약 56.2%)
1年未滿	60名 (약 30.3%)

年齡別로 보면

25歲미만	67名 (약 34.1%)
26歲—30歲	45名 (약 22.5%)
31歲—35歲	33名 (약 16.6%)
36歲—40歲	20名 (약 10%)
41歲—50歲	23名 (약 11.5%)
51歲以上	11名 (약 5.5%)

男女別로 男 141名 (약 70.8%)  
女 58名 (약 29.2%)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貧弱하기 限量없  
는 우리 公共圖書館의 資料 및 施設에 이의  
運營을 擔當한 職員들의 專門性도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래가지고서 二千五百  
萬以上の 國民들에게 어떻게 얼마만큼이  
나 奉仕할 수 있을까 하는것은 可히 珍각  
할 수 있겠습니다.

#### 四. 公共圖書館職員 任用的 現行制度

오늘날 이와같이 우리 公共圖書館이 왜  
이렇게 貧弱한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는  
지? 圖書館의 三大要素인 施設, 資料, 職員  
中 어느것보다 가장 重要的 職員의 任  
用面을 現行制度面에서 究明해 보고 또 外  
國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봄으로써  
우리의 現實을 分析하고 앞으로의 對策을  
마련하는데 參考가 될줄 믿는바입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各種圖書館에서 任用  
되는 司書에 對한 法的 根據라고는 施行令  
없는 圖書館法, 國會圖書館法(1963. 11. 26  
制定)과 國家公務員任用令의 1級乃至 5級  
職表의 5, 行政職群속에 司書의 明示가있  
고(司書敎師는 教育公務員法 第三條에  
規定되었음, 1964. 1. 1 부터 시행) 그外  
에 國立學校設置令中 國立서울大學校(이  
것도 地方大學校에는 國立이라도 없음)圖  
書館職制中에 明示된것이 全部입니다.

위에 例學한 모든 司書職은 公務員任用  
令의 行政職群속에 明示된 司書로서 採用  
되고 있으므로 그 專門職으로서의 教育經  
歷等 考慮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나마 地方公務員法속에는 司書에 對  
한 職名도 없습니다.

現在 公共圖書館이란 것이 모두가 市  
立圖書館인데 이분들은 全혀 法的인 權據  
도 없습니다.

故로 우리는 여태까지 專門性에 對한  
法的인 保護, 아니 그보다도 法的인 根據  
도 없이 일해 왔으니 외부자식 마냥 行政  
官에게 賤視되고 또 社會的으로 멸시當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圖書館職員은 앞서 例示한 司書  
職으로서 그 職務內容은 아무 아랑곳 없  
이 어제 會計課에 있던 사람을 마음에 안

맞아 오늘 圖書館으로 보낼 수 있고 오늘 保健課에 있던분이 來日 圖書館으로 와도 無妨하다는 結果가 된것입니다.

先進外國을 보면 이미 一世紀前인 1864年에 獨逸에서는 圖書館專門職에 對한 資格과 養成에 關한 法令이 制定된것을 爲始하여 英國에서는 圖書館協會가 1898년부터 每年 國家의 代行으로 專門職司書의 資格認定試驗을 實施했으며 그 外 先進各國도 法制化와 養成에 邁進하여 왔던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隣近에 있는 日本만 하더라도 半世紀前인 1906年(明治39年)에 이미 勅令274號로 公立圖書館長 및 司書의 配置를 規定했고 1933年(昭和8年)에 다시 文部省令으로 圖書館施行令이 制定되어 圖書館專門職 養成을 指示한바 있습니다.

現在 日本에는 一般公衆에 奉仕하는 即 公共圖書館의 「圖書館法」과 「學校圖書館法」「國立國會圖書館法」등 세가지의 法이 있습니다.

그中 1959年 最終으로 改正된 圖書館法에 依하면 第四條에 「圖書館에 두는 專門職員을 司書와 司書補라고 稱한다」라고 規定하고 第五項에서 그 資格을 規定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司書는 ① 大學을 卒業한者로서 第六條 規程에 依한 司書講習을 履修한者.

② 大學을 卒業한者로서 大學에서 圖書館學科目을 履修한者.

③ 三年以上 司書補로써 勤務한 經歷이 있는者가 第六條 規定에 依해 司書의 講習을 修了한者.

第六條의 “司書及 司書補의 講習은 大學이 文部大臣의 委囑을 行하는데 司書 및 司書補의 講習에 關해서 履修해야할 科目

單位, 其外 必要한 事項을 文部省令으로 定한다. 但 履修해야 할 單位는 15單位를 내려갈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司書補의 資格은

① 司書의 資格이 있는자 ② 高等學校를 卒業한者로써 第六條 規定에 依한 司書補講習을 修了한者 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圖書館職員의 任用에 專門職을 配置하도록 法的으로 뒷바침 하고 있는데 反해 우리의 現實을 드리켜보면 晚時之嘆과 서글픈 생각이 들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速히 法的인 뒷바침이 있어 專門職을 配置토록 하여 後日에 누를 끼치지 않고 遺憾없도록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苦心하여 對策을 講究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問題를 다른사람이 理解해주고 政府가 또는 行政家들이 만들어 풀리 만무 합니다. 우리스스로가 爭取해야 할것입니다. 政府로 하여금 行政人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強要하는가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잠간 現在 制定中에 있는 우리의 圖書館法施行令(案)을 보면 司書職을 正司書와 準司書로 區分한것 같습니다. (日本은 司書와 司書補로 區分 되었음)

詳細한 內容에 對해서는 아직도 決定되지 않은(案)임으로 어떻게 變更될지 모르고 또 公布以前의 (案)이라 發表할 수도 없습니다. 現在 文敎部局長級 會議에서 同案이 한조항 한조항 審議 檢討되고 있습니다.

大體로 司書職들의 專門職教育이 많이 要求 된듯 합니다.

그리고 現職에 있는 분들을 爲하여 經過措置로 附則이 마련되어 協會에서 그동안 實施한 短期講習履修者들을 經歷에 依해 救濟토록 될것 같습니다.

以上 우리의 施行令(案)이 公共圖書館職員의 圖書館職教育 및 教育面에서 비추어 볼때 그 資格基準이 若干 높은듯한 感도 있는데 反해 一部에서는 正司書의 學力은 大學을 卒業한者로 못을 박고 大學을 卒業하지 못한 사람이 正司書가 되려면 資格審議委員會 같은것을 두어서 그사람의 그間 研究, 經歷, 業績 등을 考慮해서 正司書가 되도록 해야만 된다는 一說이 있습니다.

(伊太利 같은 나라에서는 博士學位가 있어야 司書가 된다)

그레야만 大學圖書館職員은 教授들과 同等한 待遇를 받을수 있고 公共圖書館職員은 社會的으로 尊敬을 받으며 人事面에서 現在의 流配處라는 印象을 拂拭하고 羨望의 자리가 될것입니다.

아무던 앞서 살펴본 公共圖書館職員의 圖書館職教育面을 볼때 一年以上(正司書가 될수 있는분으로 생각됨)이 약 4.2% 밖에 안되고 一年以下 50時間以上(準司書가 될수 있다고 생각됨)이 約 20%에 不過하다.

그外 약 76%가 圖書館專門職 教育이 없으니 이분들의 訓練을 爲해 早速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現在 現職에 있는 公共圖書館職員이 資格獲得을 爲한 訓練을 받을수 있는 機會는 韓國協會에서 實施하는 講習會와 延世大學 學校 土曜課程이 있습니다.

그外 施行令公布以前에 라면 本協會地區 協議會가 開催할수 있는 講習도 있겠읍니다.

니다.

圖書館專門職教育을 받지 못한 분이 76%라 하지만 全公共圖書館職員數가 341名이니 240名 可量밖에 안되며 各自 강습을 받을 熱意만 있으면 위에 말씀드린 강습을 통하여 강습을 받을수 있을것이니 早速한 時日內에 全혀 講習을 받지 못한분은 받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오늘날까지 公共圖書館職員中에 이렇게 圖書館職訓練을 받지 아니한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理由의 하나가 法的인 保障과 法的인 資格要求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 說明이 必要없을것입니다.

또 이러한 結果가 公共圖書館의 沈滯를 招來한 큰 原因이 되기도 하겠읍니다.

故로 圖書館法 施行令이 하루 速히 制定되어야 하겠고 또 地方公務員 任用令에는 司書職種이 包含되어야 하겠읍니다. 여태까지는 司書의 資格基準이 없었기 때문에 公務員任用令의 一般行政職群속에 司書가 包含되어 있었지만 圖書館法施行令에서 專門職教育을 司書資格基準에서 要求 된다면은 公務員任用令에서 司書を 지금의 一般行政職群에서 그 職種, 職群 職列의 改善이 되어야만 公共圖書館의 職員을 名實 共히 專門職 司書職員의 確保問題가 解決되고 公共圖書館이 發展할수 있을것입니다.

이 職種, 職群, 職列에 對해서는 昨年 第二回圖書館大會에서 仁川市立圖書館의 張仁植館長께서 調査 發表한것을 지난1月號 “도협월보”에 掲載한바 있사오니 疑問이 있으신 분은 參考하시기 바라오며 오늘 저의 發表를 끝마치겠읍니다. 感謝합니다. (끝)